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7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【의원발의】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1.

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1. 1. 27.

경제도시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6명(박종길, 김정윤, 배지훈, 윤권근, 박정환, 안영란)
- 발의일자: 2021. 1. 11.
- 회부일자: 2021. 1. 15.
- 검토기간: 2021. 1. 15. ~ 1. 22.(8일간)

2. 제정이유

- 달서구 내 역사·문화·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·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걷는 길 조성·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걷는 길 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(안 제5조~제6조)
-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명품길 지정(안 제7조~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(안 제9조~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관계법령 및 조례
 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4호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- 비용추계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1. 11. ~ 2021. 1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내 걷는 길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·관리함으로써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향후 달서구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양하게 조성·관리되고 있는 걷는 길 현황을 파악하고, 각 길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종합 관리계획 수립,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, 명확한 예산 지원 기준 수립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【관련 법령 및 조례】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려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 · 아동 · 심신장애인 ·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· 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지역개발사업

나.~차. (생 략)

카. 도립공원 ·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 ·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□ 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산림문화 · 휴양”이라 함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.
2. “자연휴양림”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 ·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(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3. “산림욕장”(山林浴場)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4. “산림치유”란 향기,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5. “치유의 숲”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(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6. “숲길”이란 등산 · 트레킹 · 레저스포츠 · 탐방 또는 휴양 ·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(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3. ~4. (생략)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-

검토 의견서

1. 발의연월일: 2021. 1. 11.

2.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6명

3. 제안이유

- 달서구 내 역사 · 문화 · 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걷는 길 조성 ·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- 걷는 길 정보망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(안 제5조~제6조)
-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명품길 지정(안 제7조~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의 위탁(안 제9조~제10조)

5. 참고사항[관계법령]

- 「산림문화 · 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달서구 내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 · 운영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달서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찬성하여 의견 없음